

수탁사업 운영규정

부천시공사 수탁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8.06.18. 규정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공사가 수행하는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중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을 말한다.
2. “위·수탁협약서”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공사 간에 책임한계 등을 규정한 계약문서를 말한다.
3. “위탁수수료”란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사가 수탁 시행하는 대가로 위탁기관에서 공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수탁사업의 범위) 수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업무
2.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업무
3. 보상업무
4. 공사시행업무
5. 공사감리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업무 등

제5조(위·수탁협약의 체결)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및 준수의무
2. 사업의 종료일
3. 사업의 범위
4. 업무의 분담(주민편의 및 행정민원처리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5. 사업비의 부담 및 지급방법
6. 사업비의 정산
7. 위탁수수료
8. 시설물의 인계·인수
9. 하자보수의 책임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사업의 시행) 사장은 수탁사업을 처리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 위·수탁 협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산정요율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위탁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사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8.06.18. 규정 제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탁수수료 산정 요율표(제7조 관련)

구 분		수수료의 요율 기준 (공사비에 대한 비율)	비 고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100억원 이하	9.0% 이내	1.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 2년 이상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로 배분 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 이내	
	500억원 초과	7.0% 이내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공사비의 4.5% 이내	
건설사업관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기타 관리사업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기 위탁수수료는 산정요율의 기준이 되는 법령 및 고시내용은 최근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